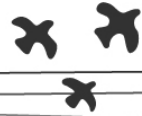


차례



학점은행제 소개

- 학점은행제란? 1
- 어떠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2
- 학위종류 및 전공 3

학점인정절차

- 학점인정절차 4
 -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5
 - 2. 학습자등록 5
 - 3. 학점인정신청 6

학점취득방법에 대한 세부안내

- 학점취득방법에 대한 세부안내 9
 - 1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9
 - 평가인정과목이란? 9
 - 주의사항 9

2. 자격 취득	13
■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13
■ 자격 학점인정기준	14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	16
3.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17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란?	17
• 독학학위제 인정학점	17
• 주의사항	17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응시자격 부여	18
• 주요내용	18
• 주의사항	19
4.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20
■ 학점인정대상학교란?	20
■ 학점인정방식	20
■ 학습구분 결정방법	21
■ 주의사항	21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의 학점인정	22
5.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22
■ 시간제등록이란?	22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23
■ 학습구분 결정방법	23
■ 주의사항	23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24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이란?	24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의 학습구분 결정	24
■ 중요무형문화재 인정학점과 제출서류	25
■ 주의사항	26

학위수여요건

● 학위수여요건	27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28
■ 학위수여요건	28
■ 학사/전문학사 학위수여요건(기술계학원)	29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30
2.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31
■ 학위수여요건	31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31
■ 주의사항	32
●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33
1. 학위신청	33
■ 학위신청을 하는 방법	34
■ 주의사항	34
2. 학위수여	34
■ 학위수여 시기	34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	35
1. 증명서 종류	35
2. 증명서 발급방법	36
■ 방문발급	36
■ 우편발급	36
■ 인터넷증명서 발급	36

학점은행제 상담

● 상담방법

- | | |
|----------|----|
| 1. 전화상담 | 38 |
| 2. 온라인상담 | 38 |
| 3. 방문상담 | 39 |

16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 | | |
|--------------------------------|----|
| ● 광역시 이상의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전화 및 주소 | 40 |
|--------------------------------|----|

학점은행센터 오시는 길

- | | |
|----------------|----|
| ● 학점은행센터 오시는 길 | 41 |
|----------------|----|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대학(교)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 재적 중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위종류 및 전공

학 사

전문학사

학 위

- 4년제 대학졸업시 주어지는 학위

학 사

전문학사

학 위

- 전문대학(2,3년제)졸업시 주어지는 학위

학 사

전문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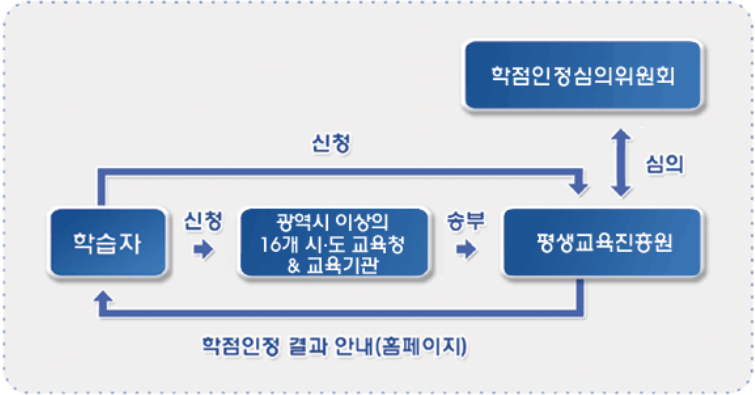
학 위

-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 참고사항

- ①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 ② 전공별 세부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교육과정은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학사], [전문학사]에서 검색할 수 있다.
-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현재 학사 119개, 전문학사 119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중요무형문화재] 부분에서 세부적인 전공 및 전공별 세부 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점인정절차



학습자등록 | 처음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혹은 그 이전 자신의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 절차

학점인정신청 | 여러 학점취득방법에 따라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누적시키기 위한 절차

※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접수를 완료하신 신청학점에 대한 인정은 접수 기간 종료 후 2개월 정도 소요

■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 일련의 신청 절차는 은행의 신청 절차와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방문 접수	1. 2~1. 31 [(②) 12.15~1.15]	4. 1~4. 30	7. 1~7. 31 [(⑧) 6. 15~7. 15]	10. 1~10. 31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 2~1. 20 [(②) 12.15~1.15]	4. 1~4. 20	7. 1~7. 20 [(⑧) 6. 15~7. 15]	10. 1~10. 20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 15~1. 15	4. 1~4. 20	6. 15~7. 15	10. 1~10. 20

※ 토·일,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 임.

■ 주의사항

- ① 학점은행센터 본원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2:00, 13:00~17:00) 주중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위에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 ②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을 준비중에 있으며, 적용 시점 및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 ③ 교육청은 40페이지에 기재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에서만 접수된다.
- ④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이란 학습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평가인정기관을 통해 단체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접수가능여부·시기·방법 등은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⑤ 학점은행센터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2. 학습자등록

■ 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 ① 학습자등록 신청서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②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제적)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대체되지 않음).
(※ 대학 학력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대학 재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첨부)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④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 4,000원

■ **주의사항**

- ①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전문대학 졸업학점 등)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및 필요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외국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을 졸업한 경우의 필요서류는 학점은행홈페이지 (<http://www.cb.or.kr>) 자료실(476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 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된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신청시기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 하는 것이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와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학점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 (별지서식 + 구비서류)

▶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별지서식 1번

-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니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격증취득

별지서식 4번

-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별지서식 2번

- : 시험합격 - 별도의 서류 없음
- : 면제교육과정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1부

▶ 시간제등록 이수

별지서식 5번

- : 수강한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별지서식 3번

- : 졸업(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부(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 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별지서식 4번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학점 취득 방법

-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대학(교)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다.
-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진다.



- 학점은행제는 학점취득방식의 다양성이 제도적인 특징이므로 자신의 여건에 맞는 학점취득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점취득방법에 대한 세부안내

- ▶ 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사항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 ▶ 간호·보건계열 전공자
- ▶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대한 안내는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자료실(476번-2008년 학점은행제 리플렛)을 통해 별도로 안내되어 있다.

1.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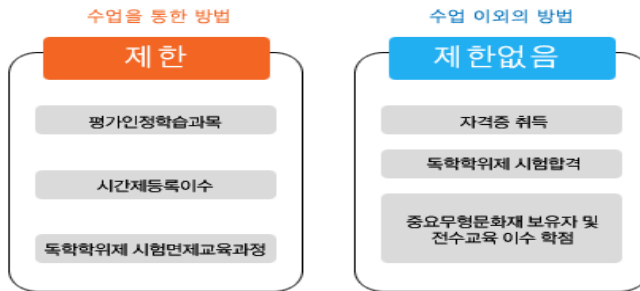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충족되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②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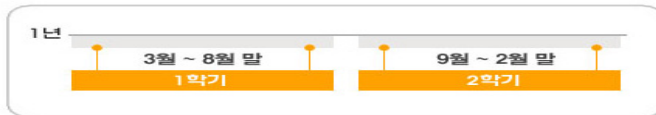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	36	없음
2002년 3월 1일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연간/ 학기당 제한학점 포함되는 학점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에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 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고, 학점은행 학점으로 신청할 경우 학점인정대상학교도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학습과목의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종강되는 학습과목은 1학기로,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종강되는 학습과목은 2학기로 산정하며, 따라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1년으로 규정



• 교육기관 최대 이수 가능학점

구 분		단일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 가능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3년제	90학점
	2년제	60학점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학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희망 전공에서 이수해야 할 학습과목 검색하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화면 상단 [표준교육과정] 하위메뉴 (학사, 전문학사, 교양, 전공-교양호환과목) 중 수강을 원하는 전공이나 교양을 선택하여 학습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사]에서 [국어국문학 전공]을 누르면, 학사 국어국문학 전공의 전공과목 세부교육과정표가 나온다. 여기서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누르면 해당과목의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과목명 우측에 [교육훈련기관보기]를 누르면 그 과목의 개설이 허가된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기관전화번호 등의 일반정보 및 해당 과목의 유효기간, 교재 등)를 볼 수 있다.

● 학사 - 국어국문학 전공

가) 교육목표 > 학사 전공 중 국어국문학 전공 선택시

언어생활에서 제 언어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언어생활의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민족의 얼이 담긴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비평하여 민족의 의식세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국문학개론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때 눌러주세요.

나) 세부교육과정표 (전공필수 6 과목 / 전공선택 20 과목)

구분	비고	과목	학점	시간		고시여부	개설교육훈련기관
				강의	실습		
전공필수		고전문학사	3	3	0	☑ 고시	Q 교육훈련기관 보기
		국문학개론	3	3	0	☑ 고시	Q 교육훈련기관 보기
		국어학개론	3	3	0	☑ 고시	Q 교육훈련기관 보기
		문학개론	3	3	0	☑ 고시	Q 교육훈련기관 보기
		문학비평론	3	3	0	☑ 고시	Q 교육훈련기관 보기
		현대문학사	3	3	0	☑ 고시	Q 교육훈련기관 보기

※ 고시란?

고시된 과목이라 함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습과목의 교수요목이 개발되어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과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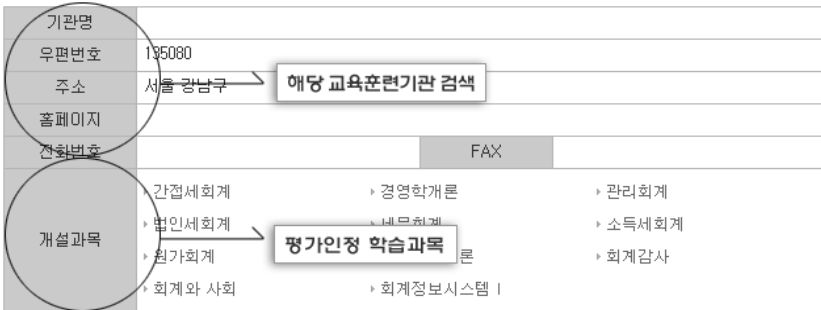
교수요목이 고시된 과목이어야만 평가인정이 가능하므로 고시되지 않은 과목일 경우에는 평가인정교육기관이 존재하지(미고시)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 유효기간이란?

해당 교육기관에서 학점인정 가능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재발급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교육기관 또한 해당 학습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교육훈련기관 검색하는 방법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화면 우측 하단 [교육훈련기관검색] 하위메뉴 [지역별]에서 [서울특별시]를 누르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기관들이 검색된다. 여기서 특정 교육기관명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정보 및 학점인정과목(개설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중 학습과목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그 과목에 대한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처음메뉴에서 검색란에 알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입력하면 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기관유형별]에서는 평가인정기관을 유형별(대학부설사회교육원, 대학부설전산원, 원격교육 등)로 검색할 수 있다.

[전공별]에서는 전공 또는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과 과목을 검색할 수 있다.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해당 전공과목을 평가인정 받은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여러 과목 이수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목별]에서는 전체 평가인정 받은 과목이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과목명을 입력하면 평가인정 받은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2. 자격 취득

▣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학점인정 기준 적용

- :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이 2009년 3월 취득자부터 큰 폭으로 변경된다.
- : “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 2008년 2월 28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다. “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는 학점인정이 가능한 전체 국가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등급 하향 조정,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개선, 감산기준 개선,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추가 학점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고시에 의해 변경되므로 반드시 기준을 확인 한 후,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적용 시기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격 (~ '09년 2월 28일까지)	2009년 3월 취득자격 부터 ('09년 3월 1일부터 ~)
기준	“제9차” 고시 기준 적용	“제10차” 고시 기준 적용
① 자격별 학점	예) - 기술사: 45학점 - 기능장: 39학점 - 기사: 30학점 - 산업기사: 24학점 - 유통관리사2급: 24학점	예) - 기술사: 45학점 - 기능장: 30학점 - 기사: 20학점 - 산업기사: 16학점 - 유통관리사2급: 10학점
② 전공연계 변경	* 자격의 시험과목과 전공과목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인정 * 자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필/일선으로 구분 	전필/전선/일선으로 구분 
③ 동일등급간 감산여부	동일한 등급 중 2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공통시험과목에 대한 감산 적용 - 27학점이상 자격: 3학점씩 - 24학점이하 자격: 2학점씩 감산 예) 사무자동화산업기사(24학점)/정보 처리산업기사(24학점)를 취득할 경우 중복시험 과목 감산을 적용하여 -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학점	공통시험과목에 대한 감산 적용 폐지 예)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 업기사를 취득할 경우 감산 없이 - 정보처리산업기사 16학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6학점

- ④ 동일 직무에 속한 자격은 최상위 1개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
 예)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전자상거래관리사2급을 취득한 경우 : 두 개의 자격이 동일직무 상
 하위 자격이므로 전자상거래관리사1급만 학점인정

종분류	직무번호	종 목
판매관리	01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02	가맹사업거래상담사(가맹거래사)

- ⑤ 학위종류별 자격 개수 제한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 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은 고시일 기준으로 즉시 적용

* [제9차 자격학점인정 기준]과 [제10차 자격학점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점은행홈페이지(www.cb.or.kr) 자료실 441번과 470번에 탑재되어 있음.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주요내용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등급	응시자격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주의사항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자격 종목에 관련된 학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관련학과 및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단, 정보처리 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은 학과제한 없이 모든 학과에서 응시 가능함.

② 학점을 취득했다라도 학점은행센터를 통해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학점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실기시험 접수 시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한다.**

예) 2008년 2회차 산업기사 시험(필기시험일 2008/5/11, 실기시험일 2008/7/5-7/18)에 응시하기 위한 학습자는 보유하고 있는 41학점을 2008년 4월에는 학점인정 신청해야 함.

③ 자격증 시험과목, 일정, 발급방식 등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http://www.hrdkorea.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이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이란?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란 혼자 힘으로 공부하여 국가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로 나뉘어 있고, 1~3단계는 시험합격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마지막 종합시험(4단계)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한다.

독학학위제 시험일정 및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제도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http://bdes.nile.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이나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단계	구 분	인 정 학 점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까지)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4단계 시험합격과목이 1~3단계에서 면제 또는 시험합격한 과목과 중복될 경우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함.

● 주의사항

- ①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해서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② 시험합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동일과목을 취득했을 시에는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단계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전자계산기구조를 이수한 학습자가 4단계에서 전자계산기구조를 합격했다면, 이 중 한과목만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③ 시험합격이 아닌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도에서 규정한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된다.**(10페이지 참조)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단계별 시험구분	응시자격
교양과정 인정시험(1단계)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주의사항

- ①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상기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라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 전에 신청기간에 맞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총 인정학점 외에도 아래 내용과 같이 동일전공 여부, 동일전공 인정학점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독학학위제의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독학학위검정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야 한다.

독학학위제 시험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은 학점	동일전공 여부	동일전공 인정학점 (전공필수 + 전공선택)
2단계	35학점 이상	×	×
3단계	70학점 이상	○	×
4단계	105학점 이상	○	16학점 이상

4.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란?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 [학점인정대상학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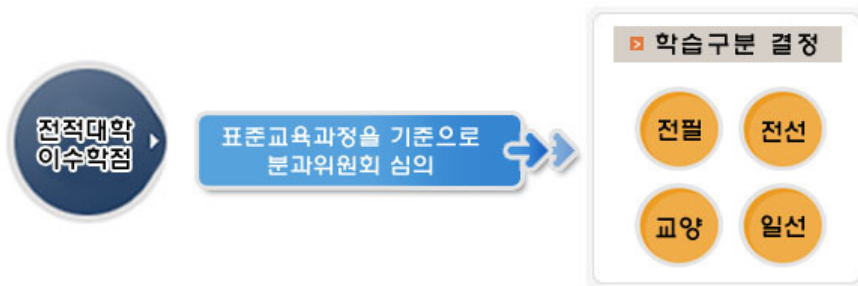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 ② 경찰대학
- ③ 단기사관학교
-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 ⑤ 한국과학기술원
- ⑥ 기능대학(단, 산업전문학사 취득이 가능한 학위 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해당 됨. 비학위과정인 기능장과정은 인정되지 않음)
- ⑦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교)(일명 사이버대학) 등

■ 학점인정방식

- ① 성적이 D-(60점)이상인 과목과 성적을 매기지 않고 이수 결과만을 표기한 (P학점, S학점 등) 과목 중 학점이 기재된 과목에 한해 인정되며, F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교(중퇴자에 한함)는 최대 140학점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를들어 90학점을 취득하여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더라도 학점 인정 신청 시, 90학점 중 과목별로 선택하여 최대 8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의 결정방법

- ① 해당 대학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상관없이 교양으로 인정가능하다.
- ② 해당대학의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경우 일차적으로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습구분을 결정하고,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지 않은 과목의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구분을 심의한다.
단, 학점은행제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전공과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위과정 및 전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예 : 4년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중퇴 후 학점은행제 학사 영어영문학 전공 희망)해당 대학의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③ 대학(교) 성적증명서에 학습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희망하는 전공에 맞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된다.



■ 주의사항

- ① 일반적으로 각 대학(교)마다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대학(교)을 중퇴·졸업한 자가 이용하므로 각 대학의 학습구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시기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고 심의에 따른 학점인정내역을 확인한 후 학습설계를 해야 한다.
- ② 졸업 또는 제적한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은 학기당, 연간 이수제한 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년제 전문대학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 인정)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에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고, 학점은행 학점으로 신청할 경우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의 학점인정

- ① 학력인정 각종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 대학 등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학위는 수여받지 못하나, 교육 기술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으로의 입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 ② 학력인정을 받은 시기에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중퇴·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③ 각 학위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공 및 교양학점과 총학점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학점은행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시간제로 이수한 학점이 최소 18학점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안내]→[학위수여]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항 3조에 의거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는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반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2007년 1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입법예고 되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 692번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운영개선 관련법령(3종) 개정 입법예고" 참고할 것)

5.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①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2007년 1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입법예고 되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고실]-[입법예고] 692번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운영개선 관련법령(3종) 개정 입법예고" 참고할 것)

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를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예) A가 시간제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 가능하다. 방법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B 대학교	C 대학교	D대학교	합 계
1학기	9	3	6	18
2학기	6	9	9	24
합계	15	12	15	42

■ 시간제등록 과목의 학습구분 결정

대학(교)에서 해당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방법과 같다.(21페이지 참조)

■ 주의사항

① 시간제등록은 대학(교)에서 실시여부, 실시과목, 수강료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시간제등록생 모집여부 및 개설과목을 확인 후 수강해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치를 인가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원격대학에 대한 정보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교육인적

자원분야- [학교정보검색]을 통해 학교구분을 [원격대학]으로 검색하면 인가된 원격대학들의 리스트,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 검색

학점은행홈페이지(<http://www.cb.or.kr>)-교육훈련기관-기관유형별-원격기관에서 검색 가능함.

- ③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학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학위취득을 위한 모든 학점을 1개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도 있다.
-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의 내용에 따라 시간제등록 과목은 **수강기간이 4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원격기관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수강기간이 8주 미만인 단기수업(계절제 포함)은 여러대학을 병행하더라도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원격대학 시간제 계절학기의 경우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하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이란?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이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승교육에 대한 경험학습을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고졸 이상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보유자의 문하생인 조교, 이수자, 전수생의 경우 각각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의 학습구분 결정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은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되며, 이수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강령탈춤 이수자가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중 전통연희과(강령탈춤)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지만, 그 외의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과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문화재보호법 개정 전 (~ 1999. 7. 19)		문화재보호법 개정 (1999. 7. 20 ~ 2001. 9. 7)		문화재보호법 개정 (2001. 9. 8 ~ 현재)		
등급	학점	등급	학점	등급	학점	
보유자	140학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보유자후보	60학점	전수교육 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 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전수생	3년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년 이상					21학점
	1년 이상					14학점
	6개월 이상					7학점
	4학점					

※ 학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 사본,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자 관련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주의사항

- ①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와 종목 명칭이 같더라도 학점인정이 되지 않는다.
-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보유자, 조교, 이수자, 전수생)은 학습자가 선택하는 전공에 따라 전공필수 혹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되며 교양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가인정 기관에서 1학기에 24학점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이수자인 경우 30학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이미 학위가 있는 사람이 중요무형문화재로 타전공 학위를 취득할 시에는 35학점을 반드시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해야 한다. 이 때 조교, 이수자, 전수생의 전수경험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2007년 1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입법예고 되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 692번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운영개선 관련법령(3종) 개정 입법예고" 참고할 것)
- ⑤ 전수생의 경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장이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개별적으로 등록 장부를 만들어 등록 접수한 이후의 경험만을 학점인정하며, 일반회원으로 이수 받았던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⑥ 이수등급이 올라가면 그 차이만큼만 학점이 추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이수자로서 이미 30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조교가 되면, 50학점(조교 학점) - 30(이수자 학점) = 20학점이 추가로 인정되어 결국 조교(50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만 인정받게 된다.

학위수여요건



- ① **전공(專攻)** :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 :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 전공선택 : 해당전공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과목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영학 전공의 전공 과목
- ② **교양(敎養)**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
- ③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의 전공 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정론을 수강했을 경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게 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에 해당 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①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의사항

전공필수학점은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으로 표준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과목수 혹은 학점으로 충족해야 한다.

※ 간호·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을(간호-7과목/ 보건계열-4과목) 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함.

◆ 학사/전문학사 학위수여요건(기술계학원)

기술계학원에서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학점의 최소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규정된 최소 이수학점의 70%에 해당하는 학점).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21학점 이상	9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④	기술계학원 이수학점	8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⑤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⑥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기술계학원을 찾는 방법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에서 (기관유형별)을 클릭하여 (기술계학원)을 누르면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계학원들을 검색할 수 있음.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이전에 이미 학위를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요건 포함)		
	학사 → 학사 학사 → 전문학사 (3년제/2년제)	3년제 → 전문 학사 학사 (3년제/2년제)	2년제 → 2년제 전문 전문 학사 학사

■ 주의사항

- ①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전공필수 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교양 및 일반선택학점은 이수할 필요가 없다.
- ②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1항 3호에 의거 **학위수여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을 통해서만** 이수할 수 있다.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학점이거나 자격취득,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점 등은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③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기존에 이미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이전에 학위를 취득한 학점 중 학점은행제로 타전공에 필요한 해당 전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 타전공에 대한 사항은 2007년 1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입법예고 되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고실]-[입법예고] 692번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운영개선 관련법령(3종) 개정 입법예고" 참고할 것)

2.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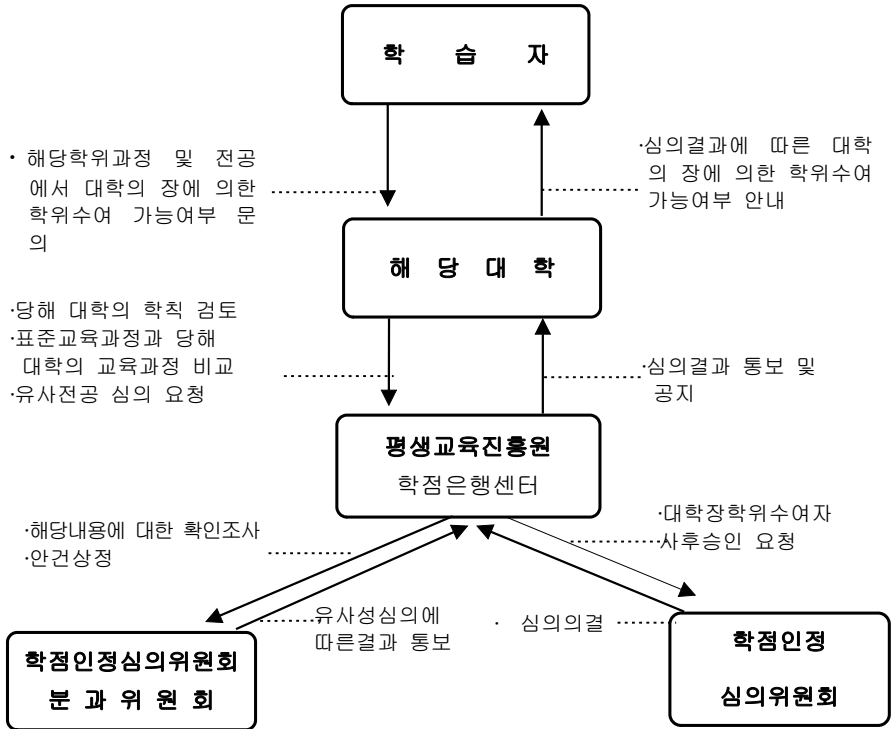
■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⑥에 해당 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①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④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해야 함).			
⑥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 ① 해당 대학(교)에서 희망하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학위수여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 등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다.
- ②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으면, **해당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한다.
- ③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학위증사본을 함께 통보한다.
- ④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는 학위수여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한다.
- ⑤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보고한다.
- ⑥ 대학(교)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인정된 학점에 대한 성적자료를 해당 대학(교)으로 이관하여, 각종 증명서발급을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한다.



주의사항

- ① 모든 대학(교)에서 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 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수여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학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경우, 먼저 해당 대학(교)를 통해 학위수여 가능여부와 세부적인 학칙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아야 한다.
- ②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 ③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으로는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다. 타전공 학위를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새롭게 이수해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2007년 1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입법예고 되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고실]-[입법예고] 692번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운영개선 관련법령(3종) 개정 입법예고" 참고할 것)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1. 학위신청

학습자가 희망하는 학위/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 학위신청을 하는 방법

학위신청은 해당 기간에 홈페이지 → ‘학위신청’이라는 배너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학위신청기간 후 접수가 완료되면 [학위신청자 명단] 및 [학위수여대상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학위신청을 해야 함.

■ 주의사항

- ① 학위신청은 학위수여대상자라면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 ② 학위수여대상자에 한해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학위를 위한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위신청기간을 유의하여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 ③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대상자는 해당 대학(교)으로 학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학위수여

[학위수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의미한다. 학점은행제로 수여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이다(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안내]-[관련법규]-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2조2항 참조).

■ 학위수여 시기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진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된다. 구체적인 학위수여식 관련 사항은 학위수여대상자가 확정 되는대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위수여식

대학졸업식과 같이 매년 2월에만 거행

증명서 발급

1. 증명서 종류

종류	내용	발급 형태	발급 방법
학위증명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음	국문 영문	방문 우편 인터넷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취득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증명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국문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월)
학력인정증명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증명하는 문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사법시험 제출용)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함		

※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한번만 발급되는 졸업장과 같은 증서로서 보관용입니다.

2. 증명서 발급방법

방문발급

- ① 학점은행센터로 내방하여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② 발급수수료 : 국문 300원, 영문 500원 /1통당 (단, 교육비납입증명서,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학점취득증명서는 발급수수료 없음)

우편발급

- ① 학점은행계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학습자 관련 신청양식-431번]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 ②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입금한다.
(입금계좌 : 611-016997-751(외환은행), 예금주 : 평생교육진흥원)
- ③ ‘증명서발급신청서’와 ‘입금증 사본’을 팩스(02-3780-9850)를 통해 학점은행센터로 송부한다.(팩스 전송 후 수신확인 전화요망 1600-0400)

※ 우편요금

발급통수	보통우편	익일특급
1-4	340	1,930
5-11	460	2,050
12-17	580	2,170
18-24	700	2,290
25-31	820	2,410
32-38	940	2,530

인터넷증명서 발급

-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중앙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웹회원 아이디가 없는 학습자는 최초 로그인 시 기존 사용하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새로운 회원아이디를 생성해야 한다.
- ② 증명서수수료(국문 1통당 300원, 영문 500원) 및 인터넷발급수수료(최초 1통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는 1통당 100원)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결제한다(결제 요금은 익월 핸드폰 요금으로 합산 청구됨).

- ※ 법학과목 취득 증빙용 증명서와 공인회계사 취득 증빙용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증명서 신청 당시의 학점인정내역이 학위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평가인정학습과목 외의 학점원(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 자격증, 독학학위제)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예: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 자격증 접수증-필기만 있는 자격은 필기접수증/실기까지 있는 자격은 실기접수증 제출)를 학점은행센터로 팩스(02-3780-9850)로 송부해야 함. 송부한 학점원을 포함하여 학위요건이 충족되면, 담당자가 승인한 이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략 1~3일의 시간이 소요됨.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관련 문의는 1600-0400로 문의 바라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웹민원센터(1644-2378)로 문의 바람.

학점은행제 상담방법

1. 전화상담

- ① 학점은행 콜센터 (국번없이) **1600-0400**으로 문의
- ② 외국에서 전화상담을 이용할 경우 **82-2-6096-0200 / 82-2-6300-0900**으로 문의
-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 원활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내용은 녹취됨

2. 온라인상담

-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게시판 - 상담실에 글을 남기면 3~7일 이내에 [상담실]에 답변이 되며 기재한 e-메일로도 답변이 송부된다.
 - ※ 학습설계 신청 절차
 - 학습설계는 1개의 취득희망전공에 대해서만 답변 가능
 - i. 제목란에 [학습설계신청 : 희망전공명]의 양식으로 기재
 - ii. 내용: 최종학력사항, 학점취득사항(자격증 취득사항, 시간제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등의 교육기관명, 학습구분, 과목명, 학점,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취득내역 등)
 - iii. 제출서류: 전적대학, 시간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성적증명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과정이수확인서), 자격증 취득내역은 정확한 명칭과 합격년 월일을 기재
 - iv.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설계 접수 후 성적증명서는 해당게시판 첨부파일로 보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팩스(02-3780-9837)로 접수
- ②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름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3. 방문상담

- ① 평일(월-금, 09:00~11:30 / 13:00~17:00)에 학점은행제 상담실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다.
- ② 방문상담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점은행 홈페이지 좌측 중앙에 [방문상담예약]란에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예약자를 우선으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② 학점은행제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단, 학위취득을 위해 부족한 학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자격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증명서 및 면제과정 이수 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내용확인 후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하다.

※ 대리방문상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 i. 위임장 1부 (학점은행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 ii. 본인 / 대리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iii. 해당 대학명, 학습구분, 이수학기, 학점 등이 정확히 기재된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1부 (해당대학 직인이 찍힌 성적증명서)

16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구 분	전 화	Fax.	우편 번호	주 소
평생교육진흥원	02)3780-9837 (콜센터)	02)526-7606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서울시 교육청 (평생학습지능과)	02)3999-403	02)3999-659	110-781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8 (신문로 2가 2-77)
부산시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051)860-0424	051)860-0429	614-703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양정1동 455-1)
대구시 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	053)757-8505	053)757-8509	706-032	대구시 수성구 난초로 38 (수성2가 119-2)
인천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275	032)420-8284	405-704	인천시 남동구 시청앞길 9 (구월동 1137)
광주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62)380-4376	062)380-4615	502-704	광주시 서구 화랑로116 (화정2동 657-37)
대전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42)480-7706	042)480-7673	302-703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294
울산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52)210-5575	052)210-5599	681-703	울산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경기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1)249-0598	031)249-0578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 495)
강원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3)258-5103	033)258-5129	200-713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사농동 84)
충청북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43)290-2281	043)290-2739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산남동 4-11)
충청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42)580-7251	042)585-8893	301-705	대전시 중구 과례2길 40 (문화1동 279-2)
전라북도 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	063)270-8235	063)270-8239	561-70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1
전라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62)6060-514	062)6060-294	500-756	광주시 북구 매화로 40 (매곡동 385)
경상북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53)603-3414	053)603-3419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산격동 1111-4)
경상남도 교육청 (평생교육과)	055)268-1399	055)268-1189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 (용호동 6-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64)710-0283	064)710-0295	690-7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

■ 학점은행센터 오시는 길



*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편 GS25옆골목 진입 후, 제일은행 옆 두산인프라코어빌딩

-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 ◆ TEL : 1600-0400(콜센터)
- ◆ 지하철
 -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 261, 162번 버스 탑승 후 [국민은행] 혹은 [국회의사당] 정류장 하차
 -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 5615, 5618, 6633, 1008번 버스 탑승 후 [국회의사당] 정류장 하차
 - 5호선 마포역 2번/3번 출구 : 263번 버스 탑승 후 [산업은행 본점] 정류장 하차
 -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 : 362, 61번 버스 탑승 후 [산업은행 본점] 정류장 하차
 -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15분 소요
- ◆ 버스
 - 61, 153, 263, 7613, 9409 버스 탑승 후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정류장 하차
- ◆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2008-10

발 행 : 2008년 5월

발행인 : 박인주

발행처 : 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150-871)

TEL (국번없이) 1600-0400

TAX 02-3780-9837

인쇄처 : 경성문화사(02-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